

대신대학교 직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대신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 15장에 의거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직제는 법령, 정관 및 기타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교직원) 본교는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1.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의 직급으로 구분한다.
2.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 및 별정직으로 구분한다.
3. 제1호의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, 겸임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를 둘 수 있다.
4. 교원은 학생을 교수·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학사에 관한 업무를 도운다.
5.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.
6. 교원 및 직원의 정년은 정관에서 정한다.

제2장 총장·부총장

제5조(총장)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.

제6조(부총장) ① 본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.

-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이 사고가 있을 EO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본 부

제7조(대학교 본부) 본교에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총무처를 두고 처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총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할수 있다.

제8조(하부조직) ①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총무처에는 과장을 두며 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.

- ② 과장은 7급 이상으로 보한다. 단 8급 직원 중 10년 이상 근무자는 계장으로 보할 수 있다.

- ③ 주임은 8급 이상으로 보한다.

제4장 대 학

제9조(대학) ① 학칙 제3조에 규정된 각 학과(부)에 학과(부)장을 두고 학과(부)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장 대학원

제10조(대학원) ① 본교에 신학대학원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으며 교학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.

제6장 부속 및 부설기관

제11조(부속기관) ①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은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 및 직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도서관) ①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,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목회신학원) ① 목회신학원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목회신학원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삭제)

제15조(삭제)

제16조(학보사) 학보사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7조(생활관) ① 생활관에 사목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생활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
③ 생활관의 총괄업무는 학생과에서 관장한다.

제18조(어학실습실) 어학실습실의 관리를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19조(부설기관) ① 대신대학교 학칙 제81조에 의거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고,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연구소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